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. 2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「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」(성주군 조례 제1848호, 2007. 7. 25. 공포) 및 「동법 시행규칙」(성주군 규칙 제1091호, 2007. 7. 25.공포)개정에 따라 참외생태학습담당이 부서조정으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참외생태학습원의 효율적 관리와 「성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」 제 4조에 의거 일직을 지정하여 365일 개관으로 성주 참외의 우수성을 알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행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참외생태학습원 업무에 2008년 개관 예정인 농경문화체험교육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 3조)

나. 법정공휴일 및 토, 일요일 일직근무자를 지정하여 학습원을 매일 개관하여 성주참외 우수성 홍보에 기여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제 10조 13호
「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제21조제20호 및 제21호
「성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 제4조

나. 예산관련사항 : 관련없음

다. 기 타

1)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″농경문화체험교육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″

제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개정사유
제3조(업무) 학습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	**제3조(업무)**----------	
1. 참외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, 보존 관리 및 전시	1. (현행과 같음)	
2. 참외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	2. (현행과 같음)	
3. 학습원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	3. (현행과 같음)	
4. 국내외 다른 식물관과의 각종 자료의 정보 및 유기적인 협조	4. (현행과 같음)	
5.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실시	5.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6. **농경문화체험교육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**	업무 신설
6. 기타 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	**7. 기타 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**	
제5조(개관및휴관) ①학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.	**제5조(개관및휴관)**①----------.	
②학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	②----------.	
1. 1월 1일, 설날, 추석, 매주 월요일	1. <삭 제>	법정공휴일 및 토, 일요일 일직 근무자 지정으로 매일 개관하여 성주참외 우수성 홍보
2. 학습원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	2. (현행과 같음)	
3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3. (현행과 같음)	
③군수는 제2항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 3일전까지 그 내용을 학습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.	③----------.	